

의안 번호	제3751호
----------	--------

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	2026년 3월 6일	김포시장
나. 회 부 일 자 :	2026년 3월 16일	
다. 상 정 일 자 :	2026년 3월 17일	
라. 의 결 일 자 :	2026년 3월 17일	

2. 제안이유

가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경감률 설정(안 제8조)
- 현행: 재산세 50% 경감
 - 개정: 재산세 최초 5년간 50% 경감, 그 다음 3년간은 25% 경감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9. 주문사항 : 없음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